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	-----

제출일자 : 2005. 7. 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위원회 결정사항의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3조제3호, 안 제3조제6호)
-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함. (안 제3조제23호)
- 다. “다른 조례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을 결정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안 제3조제26호)
- 라. 불합리한 문안 일부 수정(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는 부분 중복)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호, 제6호,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6호를 동조 제27호로 하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다른 조례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p> <p>1. 및 2. (생략)</p> <p>3. <u>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조례하는 사항</u></p> <p>4. 및 5. (생략)</p> <p>6. <u>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기획·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u></p> <p>7. ~ 22. (생략)</p> <p>23. <u>부산광역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 전산화</u></p> <p>24. ~ 25. (생략)</p> <p><신설></p> <p>26. (생략)</p>	<p>제3조(결정사항) -----</p> <p>---</p> <p>1. 및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및 5. (현행과 같음)</p> <p><삭제></p> <p>7. ~ 2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24. ~ 25. (현행과 같음)</p> <p>26. <u>다른 조례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u></p> <p>27.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 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